

지원금 신청, 언제든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



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
(www.ei.go.kr)에서 연중 수시 신청

자세한 사업 내용 및 작성 서식 등은
고용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알림마당에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(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를 참고, 2016.9.28 게재)

참여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

참여 신청 (전환계획서 제출)

* 전환 예정자의 근속기간이 만 4개월 경과된
이후부터 참여신청서 미리 제출 가능

심사·승인

* 수시 접수, 월 2회 심사 원칙

사업 실시

*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 전환 조치해야 함

지원금 신청, 지급

* 정규직전환하고 1개월 경과 후부터 월단위로 지원금 신청

사랑님과 비정규직이
함께 웃는 일터

☎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



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
세액공제 혜택도 잊지마세요!

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
1인당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
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
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
또는 ☎ 국세상담센터 (126번)에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비정규직근로자의 안정된 일자리 희망
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
응원합니다!

참여대상은
확대되고,

지원요건은
완화되고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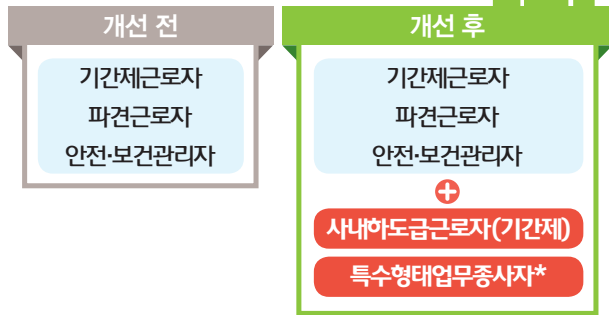
기간제인 사내하도급근로자도
특수형태업무종사자도 지원!

정규직전환 후 임금이
최저임금의 120% 이상에서
110% 이상으로 지원요건도 완화!

정규직전환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덜어 드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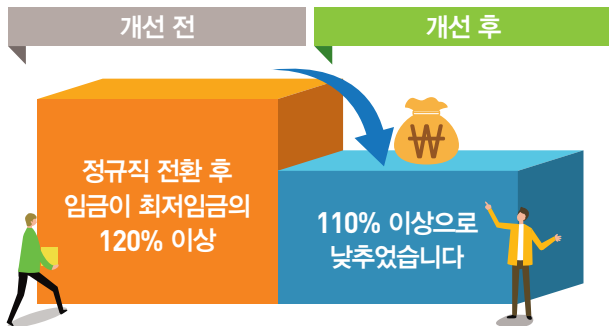
인건비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이란, 상시,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립되도록 비정규직근로자 (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)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와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▶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합니다.



* **특수형태업무종사자**: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,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
(예시) 경기보조원, 학습지교사, 보험모집인, 레미콘기사, 화물기사 등

▶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



지원금 신청, 이렇게 준비하세요

지원 대상 근로자



- 6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
다만,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·파견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
-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 (또는 사업장)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자

제외

-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
-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-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외국인 근로자 (단, 체류자격이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인 경우는 지원 가능)

지원 대상 기업

(기간제·파견·사내하도급근로자(기간제), 특수형태업무종사자)
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*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

(안전·보건관리자)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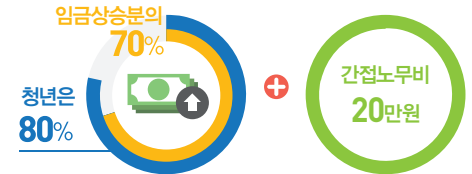
제 외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
-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부동산업, 일반유통 주점업, gambling 및 베팅업 등 부정적 업종 일부 제한

지원금 지원 내용



임금상승분의 70%(청년층은 80%)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하여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



예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

일반	(임금인상분의 70%) 28만원 지원	+	(간접노무비) 20만원 지원	월 48만원, 1년간 576만원
청년	(임금인상분의 80%) 32만원 지원	+	(간접노무비) 20만원 지원	월 52만원, 1년간 624만원

이것만은 지켜주세요!



6개월 이상 근속 한 비정규직근로자 (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)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



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10%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



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



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·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